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23
----------	--------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춤 허용업소 지정 시 소재지에 대한 제한 신설(안 제5조제3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 지정  
제한

나. 조례 제10조(행정처분 등)에 따라 춤 허용업소가 지정취소 된 영업장  
소에 대한 지정 제한 신설(안 제10조제2항)

- 행정처분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는 지정이 취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지정 제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

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10. 18. ~ 11. 7. (제출의견 없음)

2)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3)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8. 11. 15.)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구조문 대비표 1부.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더라도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처분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② (생략) <u>&lt;신설&gt;</u></p>	<p>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더라도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0조(행정처분 등) (생략) <u>&lt;신설&gt;</u></p>	<p>제10조(행정처분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행정처분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u></p>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춤 허용업소 신청 시 소재지에 대한 제한 규정과 행정처분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의 지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포구보건소 위생과 이성민
연락처	02-3153-9192